

총회신학원 보고

제104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종준
서 기 정창수

1. 운영위원회 조직

- 위 원 장 : 김종준
- 서 기 : 정창수
- 위 원 : 박재신, 최우식
- 부위원장 : 윤선율
- 회 계 : 이영구

2. 회의

1) 운영위원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2. 24(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 진행과 관련하여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 실시 공고'는 별첨대로 추인하고, 계속교육 진행은 운영위원회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② 총회신학원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운영규정(안)은 별첨 유인물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0. 3. 12(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접수 및 진행현황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제103회기편목특별과정수료자학적이관위원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7. 27(월) 12: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 정창수 목사
서 기 - 진용훈 목사



회 계 - 이영구 장로

위 원 - 박재신 목사 김한성 목사 정계규 목사 박석만 장로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0. 7. 31(금)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위원회 서기 진용훈 목사로부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다. 총회임원회가 총신대 신대원에 보낸 '103회기 특별 편목과정 수료자 학적 이관 협조의 건'과 관련해 총신대 신대원 위원회가 총회로 회신한 내용들을 8월 6일에 있는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8월 7일에 있는 총신대신대원 위원회에 본 위원회 서기 진용훈 목사를 참석시켜 학적 이적의 건을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 ③ 103회기 편목 특별 교육과정 수료자들이 요청하는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의 건은 상기 총회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8. 28(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신에 요청한 '103회기 특별 편목과정 수료자 학적 이관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총신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위원회 서기 진용훈 목사로부터 청취하다.
가. 총신 학사내규를 바꿔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수 있음 (참조: 수료증명서 예시)
나. 수료증 발급을 위해서는 총신 신대원에서 개설하는 소정의 공개강좌(인강)를 이수하여야 함 (관련 비용은 103회기 특별 편목과정 예산 잔액으로 처리)
다. 총신 신대원 명의의 졸업증 발급은 불가함.
- ③ 상기 보고는 받고, 보고 내용은 8월 31일(월)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 경과보고

1) 관련 결의

■ 104-5차 총회임원회

4. 총회신학원(원장 이승희 목사)은 폐지하기로 하고(제104회 총회 시 보고 없음), 제103기에 시행한 편목 특별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총신신대원에서 학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잔금과 함께 학교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104-10차 총회임원회

7. 총회신학원(원장 이승희 목사)이 시행한 2019년도 특별교육과정 수료자의 학적과 운영 잔금을 총신대학교에 이관하기로 한 것(제5차회의)과, 지방신학교 졸업생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9. 총회신학원 특별교육과정 수료자의 학적과 운영잔금을 총신대학교로 이관하는 문제와 총회발전기금을 반환하는 문제를 법무법인 울경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가결하다.

■ 104-13차 총회임원회

6.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을 위해 정임원에게 맡겨 총회신학원 정관을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 교육(지방신대원 위탁교육)만 시행하도록 제정하여(편목교육은 할 수 없음)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104-27차 총회임원회

2. 실행위원회 안건을 논의하고, 기타 건으로 총신대 후원이사회를 매월 30만 원 이상 후원이 가능한 자로 각 노회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건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미등록 부서 후보를 총회 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허락 요청의 건과 제103회기 편목특별과정 수료자 학적 처리 문제 건을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3. 제103회기 편목특별과정 수료자 학적 처리위원은 서기단과 회계단, 제103회 총회신학원 교무처장 진용훈 목사로 선정하다.

■ 104-28차 총회임원회

2.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시행 건으로,
 다. 제103회편목특별과정수료자 학적 이관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신대원에 학적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한 것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총회신학원장을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장으로 하고 운영일체를 일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하니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협의토록 가결하다.

■ 104-29차 총회임원회

6. 제103회기 편목 특별과정 수료자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의 건은 총신대학교에 학적을 이관하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104-2차 총회실행위원회

6. 제103회기 총회신학원(원장 이승희 목사)에서 시행한 편목특별과정 수료자의 학적을 총신대학교로 이관하기로 하고 처리를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104-30차 총회임원회

9. 총회신학원 관련 건으로,
 가. 제103회기 편목과정수료자 학적이관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총신신대원에서 공개강좌를 이수도록 하여 학적 관리와 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졸업증명서는 총회신학원장(총회장) 명의로 발급하기로 가결하다.
 나. 평생교육원은 현행법 상 신학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폐쇄하기로 가결하다.
 다. 지방신학교 졸업자 위탁교육 건은 위탁교육 지원자가 소수에 불과하며 총신신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있어 유지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2020학년도 입학자 졸업연도)까지만 현행대로 하고 이후는 폐지하기로 하고, 각 지방신학교에 2021학년도에는 총회인준과정으로 모집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2) 운영현황 보고

(1)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운영 규정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이하 <u>신학원</u>)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할로 운영하되 각종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표) 1.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2. 칼빈신학대학원, 대신대학교신학대학원, 광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를 교육한다. 3. 편목을 교육한다. 4. 필요에 따라 총회산하 전국 교회의 구성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p> <p>제3조(위치) 본 신학원은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회관 내에 둔다.</p> <p>제4조(교육위임) 필요에 따라 본 교단산하 타 기관에 교육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이하 총회신학원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할로 운영하되,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이하 총회라 한다)의 신학과 신앙에 근거한 지도자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표) 1.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의 계속교육을 실시한다. *2,3,4항 삭제</p>	<p>개정</p> <p>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운영위원회</p> <p>제5조(구성) 본 신학원은 운영위원회로 총회 전현직 임원(직전 5명, 현직 정임원 5명, 현직 장로 부총회장) 및 총신운영이사회 임원(4인)을 두어 15명으로 운영한다.</p> <p>제6조(임무) 본 신학원 운영의 제반 방향 및 정책과 학사관리 등을 결정하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시행한다.</p> <p>제7조(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1. 명예위원장 : 총회장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원장(원장) : 직전 총회장 당연직으로 본 신학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 : 총신운영이사장, 직전 장로 부총회장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4. 서기 : 직전 총회 서기 당연직으로 본 위</p>	<p>제5조(구성) 본 총회신학원은 총회 현직 정임원 5인과 총회총무로 운영토록 한다.</p> <p>제6조(임무) 총회의 정책방향과 결의에 따라 본 총회신학원 운영의 제반사항을 처리하되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시행한다.</p> <p>제7조(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삭제 1. 위원장(원장) : 총회장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 : 장로 부총회장 당연직으로 한다. 3. 서기 : 총회 서기 당연직으로 한다.</p>	<p>개정</p> <p>개정</p> <p>개정</p>

종 전	개 정	
<p>원회 문서 수발을 관리한다.</p> <p>5. 회록서기 : 직전 총회 회록서기 <u>당연직</u>으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p> <p>6. 회계 : 직전 총회 회계 <u>당연직</u>으로 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p> <p>7. 감사(2인) :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8조(임원임기) 매년 9월 교단 정기총회 후 자동으로 임기가 승계되며 종료된다.</p>	<p>4. 회록서기 : 총회 회록서기 <u>당연직</u>으로 한다.</p> <p>5. 회계 : 총회 회계 <u>당연직</u>으로 한다.</p> <p>7. 삭제</p> <p>제9조(업무처리) <u>총회 사무총장이 총회총무의 관장 하에 실무를 관리한다.</u></p>	<p>이동 및 개정</p>
<p>제3장 산하기관</p> <p>제9조(평생교육원, 총회목회대학원) 총회신학원은 산하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총회목회대학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단 세부 조직 및 운영은 세칙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p> <p>제10조(평생교육원 역할) 총회신학원 입학생은 자동으로 평생교육원생으로 자격을 획득하여 목적하는바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p> <p>제11조(평생교육원 교육범위) 목회자 재교육, 제직교육, 주일학교 교사교육, 주일학생교육,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각종 수료증 및 자격증을 부여하고 원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한 학점은행제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2조(업무 처리) 평생교육원장이 운영위원회 결의 및 신학원장의 지침과 업무분장 세칙을 따라 실무를 관리한다.</p> <p>제13조(평생교육원 부설기관) 각 세칙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p>	<p>제3장 모집 및 위탁교육</p> <p>제9조(평생교육원, 총회목회대학원) <u>삭제</u></p> <p>제10조(평생교육원 역할) <u>삭제</u></p> <p>제11조(평생교육원 교육범위) <u>삭제</u></p> <p>*제2장 9조로 으로 이동</p> <p>제13조(평생교육원 부설기관) <u>삭제</u></p> <p>제10조(모집) <u>매년 2월 첫째 주에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 실시 공고를 기독교신문과 총회홈페이지 게재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u></p> <p>제11조(등록) <u>접수된 원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합격자들에게는 2월 마지막 주에 개별 통지하고 등록 안내토록 한다.</u></p>	<p>현행법 상 평생교육원 예신학과목을 개설할 수 없음</p> <p>신설</p> <p>신설</p>



증 전	개 정	
	<p><u>제12조(위탁 및 기간)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총회신학원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칼빈, 대신, 광신 신대원 중 한 곳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게 되며, 3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단, 교육부 인정 학위는 취득할 수 없다.</u></p> <p><u>제13조(학사관리 및 보고) 본 계속교육 이수를 위한 학사관리는 칼빈, 대신, 광신의 규정에 따르고, 칼빈, 대신, 광신 신대원은 매 학기말마다 출결 및 성적 등 수료 내용을 총회신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제14조(수료자 관리 및 증빙) 본 과정을 수료한 자들은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M.Div. 졸업자들이 총신대 신대원에서 받고 있는 특별교육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해당 과정 이수 후에는 총회 강도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4장 자산과 회계</p> <p>제14조(관리) 본 신학원의 자산과 회계는 <u>총회 유지재단의 자산관리 및 총회 회계 규정</u>에 준하여 관리 및 집행하되 <u>총회신학원 특성상 정부의 회계 원칙을 따르도록 하되</u> 세칙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p>	<p>제4장 재정</p> <p>제15조(관리) 본 총회신학원의 자산과 회계는 총회 회계규정에 준하여 관리 및 집행하되, <u>관련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u> 세칙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p> <p>제16조(경비 및 유지방법) <u>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을 위한 매학기 경비와 납입증명은 제15조의 세칙에 따른다.</u></p>	<p>개정</p> <p>신설</p>
<p>제5장 부 칙</p> <p>제15조(폐원) 본 신학원의 폐원은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총회 보고 후 처리하고, 잔여 재산은 총회에 자동 귀속된다.</p> <p>제16조(정관 변경) 본 신학원의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제17조(세칙) 본 신학원의 각 세칙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p> <p>제18조(기타) 1. 본 정관은 기 시행된 총회</p>	<p>제5장 부 칙</p> <p>제16조(폐원) 1. <u>총회의 결의가 있을 시 즉시 폐원한다.</u></p> <p>2.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5인)이 폐원을 결의하면 총회 보고 후 처리한다.</p> <p>3. 잔여 재산은 총회에 자동 귀속된다.</p> <p>제17조(규정 변경) 본 총회신학원의 <u>운영규정</u> 변경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결의한 후</u>,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제18조(시행세칙) 본 총회신학원의 각 세칙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한다.</p> <p>제19조(부칙) 1. 본 운영규정은 기 시행된 총</p>	

종 전	개 정
신학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가진다. 2.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총회 헌법 및 규칙을 우선으로 따르되 기타 부분은 만국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19. 8. 21. 제정(총회인준 안됨)	회인준 지방신학교 계속교육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가진다. 2. 본 운영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총회헌법과 규칙과 결의를 우선으로 하되, 그 외는 만국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 운영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실효성을 갖는다. 2019. 8. 21. 제정 2019. 2020. 2. 24. 개정

(2)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의거 제103회기 편목특별교육 수료자 학적과 운영 자금을 총신대학교로 이관협의 중임

① 편목특별교육 시행 내역

구 분	2학기	4학기	6학기	비 고
교육기간	2019. 2.25.(월)~3.9(토)	2019. 2.25.(월)~3.15(토)	2019. 2.25.(월)~3.23(토)	
이수학점	90학점	177학점	249학점	
교육비	1,850,000원	3,155,000원	4,235,000원	
수료인원	130명	29명	4명	

② 재정현황 (2019.1.1.~2020.8.31.)

수 입		지 출		비 고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전형료	9,300,000	회의비	14,980,000	
등록금	348,935,000	교육비(강의료)	71,685,500	
이자수익등	279,774	교육업무비	10,497,450	
		학교설립 (평생교육원등록)	용역비 44,000,000 업무비 6,562,376	
		총신대발전기금 (총회모금액과 총회헌금 합산하여 지원함)	9,332,837	
		학생식사	7,427,500	사당, 양지
		광고비	3,900,000	
		인쇄비	654,150	
		잡 비	81,670	
		잔 액	189,393,291	
합 계	358,514,774		358,514,774	



(3)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위탁) 현황

①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위탁) 지원자 현황 (2019, 2020년도)

년도	대신	칼빈	광신	칼신	서울	수원	청주	전북	광주	부산	인천	대전
2019년				1	4							1
2020년	5				1					1	1	

② 위탁교육 현황

구분	칼빈신대원	대신신대원	광신신대원	계	비 고
1학년(2020)	2	6	-	8	
2학년(2019)	5	-	-	5	2학년 미등록 1명
계	7	6	-	13	

③ 재정현황 (2019.1.1.~2020.8.31.)

수 입		지 출		비 고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전형료	950,000	회의비	920,000	
등록금(@270만원)	67,500,000	광고비	3,600,000	
이자수익등	10,020	기부금(@240만원)	60,000,000	대학원 위탁비용
		잔 액	3,940,020	
합 계	68,460,020	합 계	68,460,020	